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1. 2. 18.(금) 14:3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 원
형태근 위 원
양문석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65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동 안건 의결시 이경자 부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행사 참석을 위해 의견제시 후 이석, 양문석 상임위원은 불참

- 검토의견서 주요 내용

① 결 론

①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인상안”의 적정성

-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인상안’은 재원구조 정상화를 통한 공영성 강화라는 KBS의 발전 방향과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향해야 할 콘텐츠의 질 향상에 미흡
- 또한, 디지털 전환 완수와 시청자 권리 보호, 그리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KBS가 제시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한편, 우리 위원회의 검토내용에 대해 KBS는 산정기준의 차이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며, 글로벌 콘텐츠 확대 등 공적책무 강화를 제시하면서 시급한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KBS 수신료 인상안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KBS 이사회가 국민 부담을 감안하고 합의·의결한 취지도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인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는 공적책무 확대방안의 경우에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월 1,000원 인상하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KBS 발전방향 지향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

② KBS 재원구조의 적정성 및 수신료 재산정 시점

- KBS는 월 3,500원으로 수신료 금액을 인상할 경우, ‘09년도 광고수입 비중 38.5%가 ‘14년에 33.7%까지 낮아진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것은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 총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공영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광고 축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광고 폐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상업적 재원의 축소 내지 폐지와 같은 적극적 노력에 따라 광고 수입 등 KBS의 상업적 재원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낮아진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KBS의 공영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함

- 또한, 이는 수신료 금액 재산정 시점과도 연결되어야 함.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금번 결정한 수신료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수신료 금액의 재산정은 KBS가 누적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 2014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14년에 있을 수신료 금액 재산정 시에는 방송시장에 대한 분석과 시청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광고의 폐지 또는 추가 축소가 논의되어야 하며, 이는 안정적인 수입구조 마련을 위한 불가연동제 도입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② 부대의견

① KBS의 지배구조와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 KBS 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10.11.19)한 직후 채택한 발표문에서, “KBS 이사회는 이번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법제도적 절차 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음.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의 구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KBS 지배구조와 법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음

- 우리 위원회에서도 KBS 지배구조와 법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런데, 이 같은 KBS 이사회의 ‘KBS 지배구조 및 법제도 개선방안 검토’ 요청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함.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국회에서 KBS 지배구조와 법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해 방송정책 주무기관으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것임

② 기타사항 - 채널별 회계분리 도입의 필요성

- KBS는 현재 수신료, 광고 및 기타수입 등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으며, 2개의 TV채널과 7개의 라디오 채널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채널별 소요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채널별로 회계가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KBS는 인적·물적 자원을 매체별 구분 없이 통합 운영함에 따라 채널별 회계를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임

-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공영방송사로 평가 받고 있는 BBC의 경우에도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널별 회계분리를 통해 채널별로 연간 사용된 비용을 집계하여 공표하고 있음

·따라서,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채널별 방송 콘텐츠의 원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방송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신료 납부 주체인 국민에게 KBS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채널의 구체적인 운영 실적 등을 공개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효율적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경자 부위원장 의견

- 회계분리에 관한 의견은 부대의견이 아니라 결론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맞음
- 검토의견이 현재 상태로도 KBS는 흑자운영이 가능하므로, '선 지배구조 개선의 노력', '후 수신료 인상안 제출'이 바람직

※ 양문석 상임위원 의견

- KBS가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완벽한 논리적 귀결과 재원 사용처가 완벽한 인상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국회에 의견 제출 필요

사.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1. 2. 21(월),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6:05)